

#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022 운영위원회  
2022. 9. 7.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가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거시행원칙)

- ① 본회 회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선거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 (선거의 시기)

- ① 본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2학기 말에 시행한다.
- ② 선거가 무산될 경우 다음 선거의 시기는 운영위원회(이하 '약운위'라 한다.)에서 정한다.

### 제4조 (선거준비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추천인 서명의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공고
2. 추천인 서명 기간

### 제5조 (선거기간)

-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당선확정 공고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입후보 등록 및 공고
  2. 유세기간
  3. 투표기간
  4. 당선공고
  5. 이의제기 기간
  6. 당선확정 공고
- ② 약운위는 입후보 등록일의 7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 제6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본에 속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하는 아니 된다.

### 제7조 (세칙 밖의 판단)

- ① 이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은 약운위에서 결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8조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7일 후 재학생인 본회 회원에게 있다.

### 제9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입후보 등록일 당일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에게 있다.

##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약선관위'라 한다.)는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약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 특별기구이다.

###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약선관위는 약운위가 운영위원(이하 '약운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인
  2.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
- ② 약운위는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이하 '약선관위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약선관위 구성과 구성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약선관위원은 약선관위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 ④ 약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일 7일 전까지 약선관위 구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 ① 약선관위원의 임기는 약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구성 사유가 된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약선관위원은 현직 약운위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약선관위원 직위가 박탈된다.

### 제13조 (선거관리위원장)

- 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약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약선관위를 대표한다.
- ② 약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약선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 약운위의 인준을 통하여 약선관위원 중 1인을 약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 ① 약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의 모든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② 약선관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역할)**

- ① 약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약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일 7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약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④ 약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⑤ 약선관위는 선본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⑥ 약선관위는 제96조제6항에 따라 "경고"를 조치한 선본의 포스터에 경고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⑦ 약선관위는 선거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⑧ 약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⑨ 약선관위는 특정 선본·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의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⑩ 약선관위는 학생회비를 통하여 선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며, 필요한 경우 선본으로부터 자료집·포스터 그 밖의 선전물 제작을 위하여 분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⑪ 약선관위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한정하여 각 선본으로부터 일정 수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약선관위는 해당 업무의 개시 최소 12시간 전까지 각 선본에 모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선본에는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 ⑫ 약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선본·후보자의 자격박탈
  2. 재선거
  3. 선거일정의 조정
  4. 당선무효
  5.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

약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이하 '약선관위 회의'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선거의 진행과 선본의 이의제기
  2. 세칙의 유권해석
  3.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 ② 약선관위 회의에서는 이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의 수치·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약선관위 회의는 약선관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④ 약선관위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하게 표결하여야 할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약선관위는 약선관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약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 ① 약선관위는 약운위의 심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이하 '약선관위 집행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약선관위 집행부는 약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약선관위 집행부는 제15조의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④ 약선관위 집행부는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약선관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
  2. 투표용지에 약선관위 직인을 찍는 행위
  3.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행위
- ⑤ 약선관위 집행부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본에 소속될 수 없다.

##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약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내에 1개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 제20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박탈)

- ① 본회의 회원은 약선관위원이 제14조, 제15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약운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본조 제1항이 발생하고 약운위 재적단위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약운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약운위는 사안의 경중과 의도성을 파악하여 해당 약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2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

- ① 제20조에 의해 약선관위원의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약운위는 약선관위를 해체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구성하여야 한다.
- ② 약운위는 해체한 약선관위에 속하였던 사람을 약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약운위는 약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 ① 본회 회원 또는 선본은 약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약선관위는 이의가 제기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책임 있게 의논하여야 한다.

## 제23조

삭제

##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 ① 약선관위 경비의 회계 기간은 해당 약선관위 구성일로부터 해산일까지로 한다.
- ② 약선관위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부담한다.

- ③ 약선관위 경비의 예산과 결산은 약운위의 심의를 받는다.
- ④ 약선관위 경비의 결산은 약운위 심의 이후 차기 집행위원회에 인계한다.

## 제4장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

### 제25조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지위)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는 모든 연세대학교 학생회 선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회의체이다.

### 제26조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선관위원'이라 한다.)과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제27조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운영)

모든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할 수 있으며, 중선관위원장이 주재한다.

### 제28조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역할)

- 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단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비교,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조율한다.
- ② 모든 연세대학교 학생회 선거에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한다.

## 제5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 제29조 (선거인명부)

약선관위는 중선관위가 작성한 선거 명부를 확인한다.

### 제30조 (선거공고)

약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입후보 등록일 7일 전까지 공고한다.

### 제31조 (선거운동본부 명칭)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본의 명칭(이하 '선본명'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약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명의 제한여부는 약운위에서 결정한다.

### 제32조 (선거운동본부 색상)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본의 색상(이하 '선본색'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약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색의 제한여부는 약운위에서 결정한다.

### 제33조 (입후보 등록)

-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은 약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

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8호와 제9호는 제7호에 포함된 공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미세한 표현의 차이는 약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1. hwp 또는 docx 형식의 입후보 등록원서 파일
  2. 본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추천인 서명서
  3. 후보자 소견서 (A4용지 1장 이내)
  4.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5. 후보자의 사진파일 (흑백 및 컬러 여부는 무관함)
  6. 선본원 명단
  7. hwp 또는 docx 형식의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
  8. 정책자료집 (편집 완료된 PDF 파일)
  9. hwp 또는 docx 형식의 약선관위 포스터용 정책파일
- ③ 출마형태는 "정후보 1인"의 형태 혹은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한다.
- ④ 약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고 약선관위에서 정한 공고일 08시까지 등록한 후보자의 이름·소속·학번, 선본명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 ⑤ 등록 마감시간은 등록일 18시이며, 그 이후에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 ⑥ 약선관위의 과실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21시까지 통보하고 익일 18시까지 미비 서류를 완비할 경우 등록한다.

#### **제34조 (등록무효)**

- ① 입후보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본·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경우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경우
- ② 선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약선관위는 즉시 그 선본·후보자의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장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 **제35조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의 목적)**

약선관위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선거기간에 그리고 당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약선관위원, 후보자, 그리고 선본원에게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의 구성)**

성인지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인권 교육은 학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 **제37조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의 대상)**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약선관위원

## 2. 선거 후보자 및 선본원

### 제38조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 ① 약선관위는 약선관위 회의에서 약선관위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약선관위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각 선본의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③ 약선관위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7장 시행세칙 협의모임

### 제39조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

시행세칙 협의모임(이하 '시세협'이라 한다.)은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 제40조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

시세협은 약선관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41조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

- ① 약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해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의견을 적극 중재한다.
- ② 이 세칙은 시세협을 통해 합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이 세칙 원안에 의거한 약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과된다.
- ③ 시세협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세칙의 위상에 준한다.

### 제42조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

- ① 약선관위원장은 시세협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정기소집일(입후보 등록일)에 시세협을 소집한다. 다만, 정기소집일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
-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각 선본장은 약선관위원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약선관위원장의 시세협 소집통고를 받고도 선본장이 불참한 경우(선본장의 역할을 위임한 선본원 중 1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불참한 선본은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선본은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약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시세협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약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다.
- ⑥ 약선관위는 시세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가한 각 선본장과 약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회의록으로 보관한다.

## 제8장 선거운동

### 제43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스스로 당선되거나 특정 선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

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44조 (선거운동의 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후보자의 개인유세
2. 선본·후보자의 강의실유세
3. 선본·후보자의 합동유세
4. 선본·후보자의 정책토론회
5. 선본·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선전
6. 선본·후보자의 학내 모임과 단체 방문
7. 선본·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8. 학내 언론에의 보도

#### 제45조 (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일 08시 이후부터 투표 시작 전일 18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이밖 에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제한은 약선관위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 ② 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시세협을 통해 선거운동 공간을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다.
- ③ 선본이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약선관위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를, 의도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 제46조 (추천인 서명)

- ① 추천인 서명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하지만 입후보 등록의 과정이므로 본 세칙에서 일정한 규정을 둔다.
- ② 추천인 서명을 위한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 간 시세협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④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 ⑤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중 선본 복장 착용과 유세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⑥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이름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으뜸구호·가치·표시 및 정책의 기본방향
  3. 약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
- ⑦ 연서판은 입후보 등록 시에 함께 제출한다.

#### 제47조 (선본원)

-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③ 휴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선본은 약선관위에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약선관위원과 약선관위 집행부

2. 학생회 공식 지위에 있는 사람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분과 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의 대표자와 집행부)
  3.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받은 사람
- ②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휴학생은 예외로 한다.

#### **제49조 (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인 서명 시작일 08시까지 사퇴해야 한다.
- ② 약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일 7일 전까지 사퇴서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약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 (학생회의 선거운동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독립학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2.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및 약운위에서 공식 인준한 단체
- ② 선본은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약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약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약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1조 (선거비용의 제한과 공개)**

- ①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총액의 한도는 30만원으로 한다.
- ② 약선관위는 약선관위에서 정한 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각 선본은 모든 선거 결산을 항목별로 영수증을 첨부해 투표 시작 전일 18시부터 투표 마감일 18시 까지 진리관D 1층 중앙 게시판과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네이버 카페(이하 '카페'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원 미등교 상황 시, 카페에만 공개해도 무관하다.
- ④ 약선관위는 선본이 본조 제3항을 위반한 시에 "주의"를, 투표 첫날 09시까지 게재하지 않을 시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52조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본 명의로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 약선관위에서 각 선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승인한다.

#### **제53조 (기타사항)**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약선관위에서 심의 후 약운위에서 논의·결정한다.

## **제9장 유세 및 선전**

#### **제54조 (유세)**

유세는 개인유세, 강의실유세, 합동유세, 정책토론회,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구분하며, 입후보 확정공고

일 08시 이후부터 투표 시작 전일 18시까지만 한다.

## 제55조 (유세 선전물)

- ① 유세 선전물은 인쇄매체, 중형선전물, 입간판, 플래카드, 피켓, 선본옷으로 제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하고 "경고"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선전물의 내용은 사진, 그림, 글 등으로 구성
  2. 약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
  3. 리플렛, 신문 등의 인쇄매체는 모두 흑백으로 제작
  4. 약선관위에서 허가한 소품만을 개인유세에 사용
  5. 약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승인
- ③ 선전물 부착 순서는 등록 이후 일괄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④ 인쇄매체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제한한다.
  1. 다음 각 목을 준수한 신문
    - 가. 신문용지 전판, 4면으로 제한
    - 나. 신문용지 재질에 흑백으로 제작 (80g 이하, 코팅금지)
  2. 다음 각 목을 준수한 리플렛
    - 가. A4용지(297\*210mm)의 크기, 3매 이하의 형식
    - 나. 흑백으로 제작
  3. 다음 각 목을 준수한 정책자료집
    - 가. 선본당 50쪽 이하로 제한, 각 선본에서 제작하여 약선관위가 합본으로 출판
    - 나. 출판비는 약선관위가 학생회비에서 일정 정도 부담, 나머지 금액은 각 선본이 균등하게 분담
- ⑤ 각 선본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 중형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다.



1. 그림과 같은 모양, A0 전지 2매(840\*2,376mm)의 크기
2. 현수막 실사 출력에 한하여 4도(총천연색) 출력을 하용
3. 종류 2가지 이내 (단, 1종은 25장을 넘지 못한다.)
4. 약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부착

- ⑥ 각 선본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진리관D 내에 설치
  2. 그림과 같은 모양, 1,000\*1,500(mm)의 크기
  3.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은 전체의 1/4 이하의 크기 및 현수막 실사 출력에 한해 4도(총천연색)로 출력
- ⑦ 각 선본은 후보자의 이름·소속·학번, 선본명, 으뜸구호를 포함한 플래카드를 약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 ⑧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B0 전지 4절 이하(515\*728mm)의 크기, 개수 10개 이하, 재질 우드락
  2. 색상은 바탕색 1가지, 내용은 흑백 프린트 출력하여 부착 (단, 후보자 사진을 부착할 수 없다.)
  3. 약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내용 (단, 내용은 1회에 한하여 일괄 교체 가능하다.)
  4. 우천 시를 대비하여 투명한 비닐소재로 포장 가능

## 5. 항시 선본원이 소지

- ⑨ 선본옷은 바탕색을 한 가지 색상으로만 한다. 나염은 총 두 가지 색상까지 가능하다.
- ⑩ 모든 선전물을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약선관위의 사전 승인
  - 2. 배치 금지 (단, 배치가 아닌 배포는 허용한다.)
- ⑪ 본조 제10항을 어길 경우 약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⑫ 모든 부착형 선전물을 입후보 확정공고일 08시부터 부착을 시작할 수 있고 투표시작 전일 19시까지 반드시 제거한다.

## 제56조 (온라인을 통한 선거유세)

- ① 카페 내에 각 선본 게시판을 개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시세협에서 결정할 수 있다.
- ② 카페의 내용은 본회 회원의 의견개진과 각 선본 후보자의 정보, 정책자료집, 선본의 입장 선전 등으로 한다.
- ③ 각 선본은 선전물을 게재할 수 있다. 시세협에서 선전물의 종류와 크기, 구체적인 게시처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④ 기타 약선관위가 정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7조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 ① 방송유세는 금하며 약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학내 언론 매체를 통한 보도를 허용한다.
- ② 선본의 학내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 내용은 약선관위와 각 선본의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내 언론매체는 각 선본의 공약과 정책에 대하여 논평할 수 있다. 단, 후보자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공약,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 제58조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

- ①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일정과 장소는 유세기간 중 하루를 약선관위에서 정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 시세협을 통해 장소나 일정을 변경한다.
- ② 합동유세 순서는 등록 이후 일괄적으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③ 각 선본의 후보자들은 유세시간 중 발언을 할 수 있다. 단, 유세시작 10분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합동유세 시간은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약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한 선본의 유세시간은 총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약선관위는 선본의 유세시간이 총 10분을 초과할 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하고, 15분 초과 시 1회의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5분이 초과할 때마다 추가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⑥ 정책토론회는 약선관위에서 실시여부를 논의한다.

## 제59조 (합동유세 중 유세 금지)

- ① 합동유세 시간동안 합동유세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단, 선본 옷은 제외한다.
- ② 각 선본은 자신의 유세시간에만 인쇄물을 유세장에 배포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선본은 배포할 수 없다.
- ③ 약선관위는 다른 선본 유세 시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예> 깃발을 흔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

## 제60조 (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① 매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약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본은 전량 교체 혹은 수정해야 한다.
- ② 후보자, 선본원이 강의실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본은 익일 08시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실유세에서 정정 발언과 사과발언을 해야 한다.
- ③ 약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에 대해 경중을 따져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수정된 매체나 선전물, 선본의 사과발언과 정정발언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볼 수 없고 약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10장 투표

### 제61조 (투표구 지정)

- ① 투표구는 모든 단과대학 학생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중앙 투표구'와 지정된 단과대학 학생만 투표할 수 있는 '단과대학 투표구'로 구분한다.
- ② 투표구 위치는 중선관위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투표 일주일 전까지 공고한다.

### 제62조 (점자투표보조용구)

점자투표보조용구의 내용과 크기는 중선관위의 지침을 따른다.

### 제63조 (투표기간)

투표는 3일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표율 100% 달성 시 투표소를 조기 철거한다.

### 제64조 (투표기간 연장)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약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투표기간을 하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65조 (투표시간)

투표는 각 투표일 17시부터 20시까지 할 수 있다. 단, 20시까지 줄을 선 경우는 투표할 수 있다.

### 제66조 (투표소 설치)

- ① 약선관위는 지정된 투표구마다 한 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약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의 입구와 출구는 투표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1. 약선관위원
  2. 약선관위 집행부
  3. 해당 투표소 참관인
  4.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의 도우미
- ④ 약선관위원은 상주해야 한다.

### 제67조 (투표소 운영시간)

약선관위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결정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68조 (투표소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사용법과 유의사항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한다. 다만, 중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한다.

## **제69조 (투표자 확인)**

- ① 투표자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명부 확인으로 한다.
- ② 특정 선본의 선본원이 혹은 선본원에 의해 타인이 이중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70조 (투표절차)**

- ① 선거권자는 약학대학 투표구에서 투표한다.
- ② 투표자는 소정의 증명서(학생증, 도서대출증, 재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약선관위원회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에 약선관위 직인을 받은 후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 ③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후 투표한다.

## **제71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소속·학번, 선본명, 으뜸구호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투표용지에 선본과 후보자의 란은 가로병렬로 배치한다.
- ③ 투표용지는 만원권 지폐의 크기로 정한다.

## **제72조 (투표함)**

약선관위는 투표구에 설치한 각 투표소에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3조 (투표함의 봉인 및 보관)**

- ① 약선관위원회는 투표시간 종료 후 참관인의 입회 하에 참관인과 약선관위원회의 서명으로 투표함을 봉인한다.
- ② 약선관위는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③ 약선관위는 투표일 투표시간 외의 시간에는 투표함을 약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일에 한하여 개표장으로 옮긴다. (참관인이 함께하기를 원할 경우, 함께하여야 한다.)

## **제74조 (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시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

## **제7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개표 관련 실무 위임)**

약선관위는 중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의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중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1장 참관인**

## **제76조 (참관인의 자격)**

- ① 각 선본은 투표소 당 1인의 선거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선관위 혹은 약선관위에서 발부한 명찰을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명찰에는 선본명과 참관인 본인의 이름을 기입한다.
- ③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선본원이 명찰을 달고 대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각 선본은 참관인이 필요할 경우 투표시작일 5일 전까지 참관인 명단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씩을 선택하여 참관인의 증빙서류를 약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적증명서
  - 2. 학생증
  - 3. 도서대출증
  - 4. 등록금 영수증
  - 5. 그 밖의 재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제77조 (참관인의 역할)

- ①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상황을 감독, 참관한다.
- ② 각 선본협의 하에 투표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은 투표 당일 투표소 운영 30분 전 약선관위 사무실에서 약선관위원과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 ④ 참관인은 투표 진행 중 투표소에 상주할 수 있다.

### 제78조 (참관인의 제한)

- ① 참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 2.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후보를 선전하는 언동이나 물품을 소지한 경우)
  - 3. 기타 중선관위 혹은 약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행위
- ② 약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본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참관인'이라 한다.)을 즉시 제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약선관위에 보고한다.
- ③ 약선관위는 본조 제2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참관인은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 제79조 (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진행상황에 대한 이의를 중선관위 혹은 약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이 투표소 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약선관위원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합의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약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할 경우, 약선관위원과 상대 선본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2장 개표

### 제80조 (개표시작과 순서)

- ① 투표가 종료되면 약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2. 투표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에 달함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4. 약선관위 및 개표 참관인의 참석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 제81조 (무효투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6. 약선관위 직인이 없는 것

### 제82조 (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한 후보의 란에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한 것이 옮겨 묻거나 인주가 묻어 오손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것
4. 기표란 이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제83조 (개표일과 개표장소)

- ① 선거는 투표 마지막 날 20시 30분에 개표한다.
- ② 장소는 약선관위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다.

### 제84조 (오차와 오차율)

- ① 오차는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명부상의 투표자수와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실제 투표자수의 차(절대 값)와 이중투표와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선거권자 수 × 100(%)"이다.

### 제85조 (결선투표)

- ① 1, 2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1, 2위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결선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결선투표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당선한다. 단,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본 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클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반복한다.

### 제86조 (재투표)

- ①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하고, 투표 개시 이후 개표 이전에 하나 이상의 선본이 자격 박탈되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해당 선본의 자격 박탈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3일 동안 진행하고, 모두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투표기간을 하루

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3장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 제87조 (당선)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가 2/3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경우, 개표 결과 득표수 1위와 2위 간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제88조 (당선공고)

약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 제89조 (이의제기)

- ① 약선관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선본은 선본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약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선본이 본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약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본회 회원은 서면으로 이의를 약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 ⑤ 약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의논하여야 한다.

## 제14장 선거 부정

### 제90조 (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1. 누군가 투표 방해, 이중투표와 대리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3. 후보자가 약선관위, 선본원 또는 유권자에게, 선본원이 약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4. 그 밖의 위에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 제91조 (선거 부정의 판단)

- ① 약선관위와 약운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약선관위와 약운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의논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약선관위와 약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제15장 당선 무효

### 제92조 (당선 무효)

약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해당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90조에 따라 선본의 당선 이후에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제95조에 따라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 제93조 (당선무효의 공고)

약운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장 재선거

### 제94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선거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1.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
2.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
3. 선거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4. 당선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 제17장 징계

### 제95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다음 각 호의 경우 약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약운위에서 선본·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약선관위로부터 3회의 "경고"를 조치 받은 경우
2. 약선관위의 조치에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후보자·선본원에 의한 선거 부정이 확인된 경우

### 제96조 (제재조치)

- ① 약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② 제재조치 될 수 있는 동일한 사안이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약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일 당일(08시부터 익일 08시까지)에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
  2. 약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일 당일 이후에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무효로 처리 (단, 접수일 당일 이후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 ③ 약선관위는 고의성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로 나누어 제재조치를 가하여야 한다.
- ④ 약선관위는 선본이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⑤ 약선관위는 선본이 3회 "주의"를 조치받은 경우 "경고"로 전환한다.
- ⑥ 약선관위는 "경고"를 조치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 1. "경고"의 사유와 조치시기를 기재
  - 2. A4용지(297\*210mm)의 크기로 부착
  - 3. 첫 번째 경고장은 노란색,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 용지를 사용
  - 4. 익일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
- ⑦ "경고"를 조치받은 선본은 익일 08시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실유세에서 경고 사유에 대한 발언을 해야 한다.